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2012. 2



IT보안인증사무국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정의)	1
제2장 평가인증체계	4
제1절 공 통	4
제4조(기본목표)	4
제5조(평가원칙)	4
제6조(평가인증절차)	5
제7조(인증서 상호인정)	5
제8조(평가인증 관련기관)	5
제9조(비밀엄수)	5
제10조(제출물의 관리)	5
제11조(제출물의 구분)	6
제12조(제출물의 분류원칙)	6
제13조(제출물의 분류지침)	6
제14조(제출물의 표시)	6
제15조(제출물의 보관)	7
제2절 신청기관	7
제16조(평가신청)	7
제17조(보호프로파일 적용)	7
제18조(제품명 오용 금지)	8

제19조(평가공동신청)	8
제20조(비용 납부)	8
제21조(평가환경 제공)	8
제22조(회의 참석)	8
제23조(이의 제기)	8
제3절 평가기관	9
제24조(평가기관 지정요건)	9
제25조(평가기관 승인신청)	9
제26조(시험평가 등)	10
제27조(승인신청기관 심사 등)	10
제28조(평가기관 관리 등)	11
제29조(평가기관 재심사)	11
제30조(평가기관 자격정지)	12
제31조(평가기관 자격취소)	12
제32조(평가기관 승인서 반납)	13
제33조(평가자 구분)	13
제34조(평가자 자격부여)	13
제34조의2(평가자 승급)	14
제35조(평가자의 독립성 보장)	15
제36조(평가자문)	15
제37조(평가신청접수증 발급)	15
제38조(평가계약)	16
제39조(제출물 설명회)	16
제40조(평가수행계획서 작성)	16
제41조(평가업무 수행)	17
제41조의2(평가관련업무 위탁)	17
제42조(개발환경 보안점검)	18
제43조(평가결과보고서 제공)	18

제44조(평가중단)	18
제45조(평가계약 해지)	18
제46조(제출물의 반납)	19
제47조(평가자 자격관리)	19
제4절 인증기관	20
제48조(IT보안인증사무국)	20
제49조(인증자 구분)	20
제50조(교육과정 운영)	20
제51조(인증수행)	21
제51조의2(인증관련업무 위탁)	22
제52조(인증보고서 공개 등)	21
제53조(제출물 처리)	23
제54조(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23
제5절 인증위원회	23
제55조(인증위원회 운영)	23
제56조(위원회 구성)	24
제57조(위원장의 직무)	24
제58조(간사의 직무)	24
제59조(위원회의 개최)	24
제60조(심의·의결)	25
제61조(서면심의)	25
제62조(심의결과 통보)	25
제63조(보안조치)	25
제64조(심사비 지급)	25
제6절 인증서보유기관	26
제65조(평가보증등급 유지)	26

제66조(인증내용 오·남용 금지)	26
제67조(평가결과보고서 열람)	26

제3장 인증제품 사후관리 26

제68조(인증제품 목록 공개)	26
제69조(인증제품 관리)	26
제70조(인증 취소) <삭제>	27
제71조(인증효력유지)	27
제71조의2(인증서 효력연장)	27
제72조(인증서 재발급)	28
제73조(인증제품관리 실태조사)	28
제74조(실태조사 결과의 처리) <삭제>	29
제75조(인증서 효력 정지)	29
제76조(인증 취소)	30

부칙	31
----------	----

별표 및 별지서식

별 표	35
별지 서식	41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및 유사제품 일괄평가인증을 위한 세부 수행지침】

제1조(목적)	84
제2조(정의)	84
제3조(국내용 제품 평가신청)	85

제4조(일괄평가신청)	85
제5조(국내용 제품에 대한 평가)	85
제5조의2(개발환경 보안점검)	86
제6조(국내 인증서 발급)	86
제7조(국내용 인증제품에 대한 관리)	86
부칙	87

별지서식

별 표	89
별지 서식	90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제정 2000. 8.23
개정 2003. 4. 1
개정 2004.12.20
개정 2005. 5. 7
개정 2005. 9.22
개정 2005.12.26
개정 2007. 1. 1 전면개정
개정 2007. 4.15
개정 2007.12. 1
개정 2008. 9. 1
개정 2009. 3.20
개정 2010. 1. 1
개정 2011. 7. 20
개정 2012. 2.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의하여 정보보호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이하 ‘정보보호제품 등’이라 한다) 평가 및 인증업무와 평가기관 승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인증기관, 평가기관, 신청기관, 인증서보유기관에 적용한다.

②삭제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제품”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총칭한다.
2. “평가기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ISO/IEC 15408)」을 수용, 고시한 것을 말하며, 국제상호인정협정 관리위원회가 이 평가기준에 관하여 최종 해석한 내용(Final Interpretation)을 포함한다. <개정 2008.9.1>
3. “평가방법론”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방법론」(ISO/IEC 18045)을 말한다.
4. “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정보보호제품이 사용될 환경에서 필요한 보안기능 및 보증요구사항을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5. “평가”라 함은 정보보호제품 등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재평가”라 함은 보안기능의 향상,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인증제품의 형상이 변경된 경우에 수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1.7.20>
7. “인증”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정보보호제품 등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증한 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기관”이라 함은 정보보호제품 등의 평가를 의뢰한 기관,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9. “인정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를 운영하는 기술표준원을 말한다.
10.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인정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서를 획득한 기관이나 업체를 말한다.

11. “평가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 지정받은 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기관으로 승인받은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7.20>
12. “시험평가”라 함은 공인시험기관이 정보보호제품 등의 평가 수행능력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예비 평가활동을 말한다.
13. “인증기관”이라 함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및 공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인증보고서”라 함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7.20>
15. “국제공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정보보호제품 등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증한 후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16. “인증서보유기관”이라 함은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관,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7. “인증제품”이라 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18. “인증마크”라 함은 정보보호제품이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표지(標識)를 말한다.
19. “제출물”이라 함은 신청기관이 정보보호제품 등을 평가받기 위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제품 및 관련문서 등을 말한다.
20. “평가단위보고서”라 함은 평가과정에서 제출물이 평가방법론의 항목별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1. “관찰보고서”라 함은 평가과정에서 제출물이 평가방법론의 항목별 요구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2. “평가결과보고서”라 함은 평가단위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23. “평가신청제품”이라 함은 평가계약 후 평가착수 전까지의 정보보호제품 등을 말한다.
24. “평가대상제품(TOE : Target of Evaluation)”이라 함은 평가에 착수한 후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의 정보보호제품 등을 말한다.

제2장 평가인증체계

제1절 공 통

제4조(기본목표)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도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제품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2. 국가통신망의 정보보호수준 제고
3.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개선으로 제품의 경쟁력 제고

제5조(평가원칙)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반복성, 재생산성 및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객관성 :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정확한 해석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정성 : 정보보호제품, 보호프로파일 그리고 신청기관에 대

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반복성 : 평가된 정보보호제품 등을 동일한 평가자가 다시 평가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4. 재생산성 : 평가된 정보보호제품 등을 다른 평가자가 다시 평가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5. 적절성 : 정보보호제품 등의 평가결과가 평가보증등급의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인증 절차)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인증서 상호인정) 우리나라 이외의 인증서발행국이 발급한 인증서는 국제상호인정협정에 의하여 국내에서도 인정한다. 다만, 국제상호인정협정이 국내법 또는 평가인증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국내법 또는 관련규정이 우선한다.

제8조(평가인증 관련기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관련기관은 별표 2와 같이 인증기관, 인정기관, 평가기관, 신청기관, 인증서보유기관으로 구분한다.

제9조(비밀엄수) ①평가자와 인증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신청기관 또는 인증서보유기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증기관은 평가자 또는 인증자 자격을 최초 부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평가인증관련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제출물의 관리) ①신청기관과 평가기관간 제출물을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평가기관 기술책임자 확인 하에 제출물 인계인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평가기관은 인수받은 제출물을 제출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에 제출물 관리대장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인증기관과 평가기관은 제출물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경우에는 신청기관 또는 인증서보유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물의 분류) 제출물은 유출될 경우 신청기관에 손해를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기밀 : 신청기관의 핵심기술이 포함된 문서 또는 제품으로서 유출될 경우 신청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출물
2. 일반 :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제출물

제12조(제출물의 분류원칙) 기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제출물의 분류지침) ①평가기관은 제출물 분류의 통일성과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물 세부분류지침을 작성하고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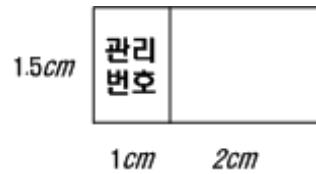
②평가기관은 제출물 세부분류지침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인증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출물의 표시) ①기밀은 다음과 같은 표시를 제출물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한다.



②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제품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제15조(제출물의 보관) 제출물중 기밀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일반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한다. 다만, 캐비닛에 보관할 수 없는 제출물은 그에 상응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신청기관

제16조(평가신청) ①신청기관이 평가를 신청할 때에는 평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제출물 2부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보증등급별 제출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출물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②신청기관은 제출물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관이 제공한 제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7.20>

③신청기관은 평가범위 및 평가보증등급에 부합하도록 제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신청기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신청기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출물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프로파일 적용) ①신청기관이 보호프로파일에 따라 정보

보호제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해당 보호프로파일의 보안요구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1>

②신청기관은 보호프로파일을 적용하지 않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하여 평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품명 오용 금지) 신청기관은 정보보호제품 등의 보안기능에 적합한 제품명으로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공동신청) ①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중 1개 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정하고, 여타 기관은 공동신청기관명부(별지 제5호 서식)에 연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대표기관은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제20조(비용 납부) 신청기관은 평가수수료,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 인증효력유지 및 인증서효력연장을 위한 비용 등 평가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21조(평가환경 제공) 신청기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환경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참석) 신청기관은 평가수행계획서 검토회의 등 평가기관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관과 협의하여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이의 제기) ①신청기관은 평가인증업무에 대하여 이의·불만·분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평가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평가기관

제24조(평가기관 지정요건) ①평가기관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공인시험기관(이하 ‘승인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1. 법인으로서는 대한민국 내에 위치
2. 평가기관 품질매뉴얼상 기술책임자 1명을 포함한 선임평가자 3명 이상, 주임평가자 2명 이상 보유 <개정 2009.3.20>
3. 독립된 의사결정 체계 유지 및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장비 등 확보
4. 국제표준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수립한 자체 품질매뉴얼(Quality Manual) 및 절차서 구비
5. 기타 인증기관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승인신청기관은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의 부록B 제3항(평가기관 인정 및 승인)에 기술된 평가기관 승인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설 2009.3.20>

제25조(평가기관 승인신청) ①평가기관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공인시험기관은 평가기관 승인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2. 국제표준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수립한 자체 품질매뉴얼(Quality Manual) 이행실적 1부
3. 평가관련 조직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4. 인정기관이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인정서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대표자 개인신용보고서 각 1부 <개정 2010.1.1>

②인증기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평가기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험평가 등) ①승인신청기관은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평가기관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인증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험평가용 제품을 선정하고 관련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승인신청기관의 공인시험기관 인정시 인증기관이 기술능력 평가를 수행한 경우 시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승인신청기관은 시험평가용 제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18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수행계획서
2. 평가단위보고서
3. 관찰보고서
4. 평가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5. 회의록

제27조(승인신청기관 심사 등) ①인증기관은 제26조제2항의 결과물을 접수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승인신청기관에 대해 평가업무 수행역량과 자체 품질매뉴얼 준수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②인증기관은 전항에 의한 심사결과 승인신청기관이 평가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이 승인신청기관에 대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평가기관 승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승인신청기관에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범위
3. 평가기관의 승인일자 및 유효기간

제28조(평가기관 관리 등) ①인증기관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1. 평가인증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및 평가업무 수행의 적절성
2. 평가자 보수교육 이수 등 평가자 자격유지 실태
3. 기타 평가기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은 전항의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이 평가관련 규정 및 제도를 수립하거나 외부에 평가관련 문서를 공개할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평가자 변동 등 평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제29조(평가기관 재심사) ①인증기관은 평가기관이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4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고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범위 등 중요사항의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7.20>

②인증기관은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기관 재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재심사를 실시하기 전 1년 이내에

EAL4 이상의 등급에 대한 평가실적이 있는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제26조에서 정한 시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평가기관 자격 만료 3개월 전에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0>

④평가기관은 재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0>

제30조(평가기관 자격정지) 인증기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가기관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평가기관이 제24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평가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28조제2항, 제28조제4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2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평가기관의 귀책사유로 평가업무 수행에 차질이 초래된 경우

제31조(평가기관 자격취소) ①인증기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간 정보보호제품 등에 대한 평가실적이 없는 경우 <개정 2011.7.20>
3. 평가기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4. 평가기관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신청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련정보를 신청기관의 동의없이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투자자,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개정 2011.7.20>

6. 평가기관이 파산하거나 자격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기타 평가기관으로서 자격유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평가기관은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물을 신청기관에 반납하고 평가단위보고서 등 평가관련 산출물을 인증기관 및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평가기관 승인서 반납) 평가기관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평가기관 승인서를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자 구분) 평가자는 평가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평가자 : EAL5 이하의 등급에 대해 평가수행이 가능한 자 <개정 2011.7.20>

2. 주임평가자 : EAL3 이하의 등급에 대해 평가수행이 가능한 자

3. 수습평가자 : 상위 평가자의 평가업무를 보조하는 자

제34조(평가자 자격부여)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자 자격증(별지 제11호 서식)을 수여한다. 단, 수습평가자에 대한 자격증은 자격시험 주관기관에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1. 선임평가자 : 주임평가자 자격 취득 후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EAL4이상 등급 3회를 포함한 총 6회 이상의 평가수행에 참여한 자 <개정 2011.7.20>

2. 주임평가자 : 수습평가자 자격 취득 후 평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EAL3이상 등급의 평가수행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개정 2009.3.20>

3. 수습평가자 :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평가인증관련 전문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수습평가자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개정 2011.7.20>

②전항과 별도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도 선임평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9.1>

1. 정보통신분야 공인시험기관이나 정보보호업체에서 평가 유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주임평가자 자격을 취득한 자 <신설 2008.9.1>
2.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등 평가인증 관련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3. 최근 1년 이내에 40시간 이상 평가관련 교육을 이수
4. EAL4 등급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
5. EAL5 이상 등급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에 대한 기본지식을 보유
6. 기타 평가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④ 삭제

제34조의2(평가자 승급) ①평가기관은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평가자 자격승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평가자 자격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평가자 자격승급 요청자가 제3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평가기관은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선임평가자 자격승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자 자격검토 요청서 1부
2. 평가수행계획서 등 평가업무 수행중 작성한 문서 사본 1부

3. 기타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문서

④인증기관은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1-3호 서식의 평가자 자격심사 점검항목에 따라 선임평가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승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항의 제출문서만으로 승급 여부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자격승급 요청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자격승급 요청자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승급불가 또는 보류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09.3.20>

[본조신설 2008.9.1]

제35조(평가의 독립성 보장) 평가대상제품의 개발 또는 제출물 작성에 참여한 평가자는 해당 제품의 평가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평가자문) 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1. 평가기준 및 평가인증 절차
2. 보호프로파일 적용 방법 또는 평가보증등급별 제출물 작성 방법
3. 평가인증 정책 등

②전항 제3호에 대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인증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평가신청접수증 발급) 평가기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평가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평가신청접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평가신청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1. 평가신청 접수와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설 201

1.7.20>

2. 제출물의 내용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신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1.7.20>

제38조(평가계약) ①신청기관은 평가신청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평가기관에 평가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평가계약일을 정하고 평가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8.9.1>

②평가기관은 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물 1부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요청시 평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신청기관은 평가계약 체결시 보안목표명세서, 인증보고서 등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정보에 대한 공개 동의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목표명세서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개용 보안목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제39조(제출물 설명회) 평가기관은 평가신청제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평가착수 전에 신청기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평가수행계획서 작성) ①평가기관은 평가착수를 위하여 평가신청제품의 특성, 평가보증등급, 평가범위, 평가반 구성 및 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수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EAL6 이상의 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②평가반 구성 및 평가일정은 평가신청제품의 특성, 평가보증등급 및 평가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평가기관은 평가진행 도중에 평가자 교체 등 평가수행계획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평가업무 수행) ①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이 승인한 평가수행계획서에 따라 평가대상제품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론의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②평가기관은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수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1.7.20>
2. 평가단위보고서(별지 제14호 서식)
3. 관찰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4. 평가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이동 <2011.7.20>]
5. 평가결과보고서 영문 요약본 <신설 2011.7.20>
6. 삭제 [제41조제2항제4호로 이동 <2011.7.20>]

③전항의 문서 내용 중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정·보완을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인증기관 및 신청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수행계획서와 관찰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기관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독립 및 취약성시험을 위한 평가환경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삭제

제41조의2(평가관련업무 위탁) ①평가기관은 제품 평가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시험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험의뢰 대상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시험관련 조직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실적 1부
3. 시험환경에 대한 보안관리대책 1부

3. 인증기관이 시험의뢰 대상기관의 적격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인증기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평가기관에 통보한다.

제42조(개발환경 보안점검) ①평가기관은 신청기관의 평가대상제품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②전항의 보안점검은 별표 4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평가결과보고서 제공) 평가기관은 인증서보유기관이 평가결과보고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관의 평가관련 핵심기술 유출 소지가 있는 내용은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평가중단) ①평가기관은 평가과정에서 평가계약서에 명시된 평가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9.1>

1. 삭제
2. 삭제

②평가기관이 평가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인증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결과 평가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평가계약 해지)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파산,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관이 평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철회한 경우
3. 제출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소송 결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될 경우 <신설 2010.1.1>

제46조(제출물의 반납) 평가기관은 인증완료 또는 평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출물을 신청기관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증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체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1.7.20>

제47조(평가자 자격관리) ①주임이상 평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2년마다 인증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관련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매 3년마다 주임이상 평가자에 대해 평가인증 관련 규정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제품평가 참여실적 등을 심사하여 평가자 자격의 유지 또는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3.20>

③평가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인증기관에 자격정지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20>

④인증기관은 평가자 자격이 정지된 자로부터 자격정지 철회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평가자를 EAL3 등급 이상(선임평가자는 EAL4 등급 이상)의 제품평가에 보조 평가자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평가수행 실적을 검토하여 자격정지 철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3.20>

⑤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평가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3.2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평가자 자격정지 상태에서 인증기관의 별도 허가없이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평가자 자격정지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
- ⑥평가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평가자 자격증을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0>

제4절 인증기관

제48조(IT보안인증사무국) ①IT보안인증사무국(이하 ‘인증사무국’이라 한다)의 장은 정보보호제품 인증기관을 대표하는 인증업무 책임자로서 인증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개정 2012.2.1>

②인증사무국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며 사무국의 편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2.1>

③인증사무국은 본 수행규정상의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인정기관과 합동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를 주관한다. <신설 2012.2.1>

제49조(인증자 구분) 인증기관의 인증자는 경력 및 인증수행 능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인증자 : 주임인증자 자격 취득 후 EAL 4 이상 등급의 인증과정에 4회 이상 참여한 자
2. 주임인증자 : 수습인증자로서 EAL 3 이상 등급의 인증과정에 4회 이상 참여한 자
3. 수습인증자 :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평가인증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습평가자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개정 2011.7.20>

제50조(교육과정 운영)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자체

적으로 편성·운영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 횟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1. 일반교육과정 :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편성·운영 <개정 2011.7.20>
2. 보수교육과정 : 주임 이상의 평가자 및 인증자를 대상으로 연 1회 편성·운영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11.7.20>]
3. 삭제 [제50조제1항제2호로 이동 <2011.7.20>]

② 삭제

제51조(인증수행) ①인증기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한다. <개정 2011.7.20>

1. 평가수행계획서
 - 가. 평가신청 구분 및 평가반 구성의 타당성
 - 나. 평가기간 및 평가범위의 적정성
 - 다. 기타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평가단위보고서 및 관찰보고서
 - 가. 평가방법론의 평가항목별 요구수준에 맞게 평가하였는지 여부
 - 나. 평가자 독립 시험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정이동 <2011.7.20>]
 - 다. 평가자 취약성 시험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개정이동 <2011.7.20>]
 - 라. 보안점검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제51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11.7.20>]
 - 마. 기타 평가수행에서 나타난 사항

3. 평가결과보고서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이동 <2011.7.20>]

가. 평가결과의 적정성

나. 기타 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사항

4. 삭제 [제51조제1항제2호로 이동 <2011.7.20>]

5. 삭제 [제51조제1항제3호로 이동 <2011.7.20>]

②전항의 검토결과는 30일 이내에 인증기관 검토의견서에 포함하여 평가기관에 통보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업무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제품에 대한 독립시험 및 취약성시험

2. 신청기관에 대한 개발환경 보안점검

④평가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기술책임자 주관 하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 유지한다.

제51조의2(인증관련업무 위탁) ①인증기관은 제품 인증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인증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신설 2010.1.1>

제52조(인증보고서 공개 등) ①인증기관은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인증을 완료하고 인증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7.20>

②인증기관은 정보보호제품을 도입하는 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의 보안목표명세서 및 인증보고서를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보안목표명세서 등 신청기관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공개범위를

결정한다.<개정 2011.7.20>

제53조(제출물 처리) ①인증기관은 평가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증을 완료한 경우 제출물을 신청기관에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신청기관이 동의한 경우 등에는 자체 폐기하고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1.7.20>

②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계속 제출물(원시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설계서는 제외)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제54조(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①인증기관은 인증이 완료된 정보 보호제품에 대해 신청기관에 인증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인증마크(별지 제19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인증마크는 신청기관이 인증마크 사용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평가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교부한다. <개정 2012.2.1>

②인증기관은 인증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기관이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인증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 발급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2.2.1>

제5절 인증위원회

제55조(인증위원회 운영)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관련규정 제·개정 자문 <개정 2011.7.20>
2. 평가결과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자문 <개정 2011.7.20>
3. 평가기관 자격 정지·취소 등에 대한 심의 및 신청기관, 평가기관, 인증기관, 인증서 보유기관간 분쟁 조정 <개정 2011.7.20>

1.7.20>

4.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인증사무국의 장이 된다.
2.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정보보호전문가 12인 이내로 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간사는 인증사무국의 기술책임자가 수행한다. <개정 2012.2.1>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적합성검증부서 책임자

③선임직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정보보호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5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업무 총괄 및 회의 주재
2. 선임직 위원 위촉

제58조(간사의 직무)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안건 상정 및 위원회 회의 진행
2. 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결과 종합 <개정 2011.7.20>

제59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회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1.1>

제60조(심의·의결) ①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기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안 검토의견서(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정보보호제품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결과 ‘부(否)’ 판정을 내린 경우 신청기관은 ‘부(否)’ 판정 사유를 보완한 후 평가기관에 제출하고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서면 심의) ①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②서면으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3조(보안조치) ①위원장은 평가인증업무와 관련된 중요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서약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1.7.20>

②위원은 회의 종료시 관련 자료를 모두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7.20>

제64조(자문·심의비 지급) 인증기관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심의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자문·심의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1.7.20>

제6절 인증서보유기관

제65조(평가보증등급 유지) 인증서보유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제품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는 등 평가보증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인증내용 오·남용 금지) ①인증서보유기관은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내용 이외의 허위사실을 제품에 표기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인증서보유기관은 인증마크, 국제상호인정협정 로고 등을 인증기관과 협의없이 무단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1.7.20>

제67조(평가결과보고서 열람) 인증서보유기관은 평가기관에 대해 평가결과보고서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68조(인증제품 목록 공개)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1.7.20>

② 삭제

제69조(인증제품 관리) ①인증서의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1조의2(인증서효력연장)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인증제품이 공개된 최신 공격기법에 취약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인증서효력을 만료일로부터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②인증기관은 인증서 효력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증서보유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2. 인증제품의 보안기능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한 경우 <신설 2012.2.1>
3. 신규 운영체제의 등장 등 인증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환경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12.2.1>

②인증기관은 인증제품에 대한 신규 취약점 발굴·제거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취약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신규취약점 발굴·제거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0>

제70조(인증 취소) 삭제

[중전 제70조는 제76조로 이동 <2007.12.1>]

제71조(인증효력유지) ①인증서보유기관이 인증제품의 형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증효력유지를 위하여 인증효력유지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 및 보안영향분석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인증효력유지 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인증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보안기능 분석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인증효력유지의 세부절차는 국제상호인정협정 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증 연속성 : CCRA 요구사항」(CCIMB-2004-02-009)을 준용한다.

제71조의2(인증서효력연장) ①인증서보유기관은 인증서효력연장을 위하여 인증서 만료일 90일 이전에 인증서효력연장 신청서(별지 제23호의2 서식) 및 자체취약성분석서(별지 제24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인증서보유기관이 제출한 자체취약성분석서를 검토하여 인증제품이 공개된 최신 공격기법에 대해 취약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인증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인증서보유기관은 인증서효력연장 신청시 인증제품의 형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71조(인증효력유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증효력유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72조(인증서 재발급) ①인증서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안이 발생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별지 서식 제25호)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2.1>

1. 인증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2. 인증서의 사용 권리를 양수한 경우
3. 인증서보유기관이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의거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

1. 인증서 소유권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제품 소스코드 관리 등 보안관리대책
3. 제65조에서 정한 인증제품 사후관리대책

③인증기관은 전항의 점검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 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2.1>

제73조(인증제품관리 실태조사) ①인증기관은 인증제품에 대한 형상의 무단 변경 여부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기 위하여 인증서보유기관 또는 인증제품 도입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②정기점검은 연 1회, 수시점검은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③인증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에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실태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완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실태조사결과의 처리) 삭제

[중전 제74조는 제73조로 통합 <2007.12.1>]

제75조(인증서효력 정지)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서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인증제품 형상의 무단변경 수준이 「보증 연속성 : CCRA 요구사항」에 의거, 변경승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2. 인증제품 형상의 무단변경 수준이 「보증 연속성 : CCRA 요구사항」에 의거, 재평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이상 인증서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3. 제65조(평가보증등급 유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10.1.1>]
4. 제66조(인증내용 오·남용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 <2010.1.1>]
5. 인증서보유기관이 제69조(인증제품 관리) 제2항 제1호에 의한 조치를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효

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10.1.1>]

6. 인증서보유기관이 제69조(인증제품 관리)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조치를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2.2.1>

7. 인증서효력 만료일까지 제71조의2(인증서효력연장) 제2항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시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인증서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①의2 인증기관은 인증서효력이 정지된 경우 인증제품 목록에 있는 해당제품에 인증서효력 정지기간을 표시하고 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신설 20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인증서 보유기관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제76조(인증 취소)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인증서보유기관에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삭제 [제75조제1항제3호로 이동 <2010.1.1>]
3. 인증서 효력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인증제품을 판매한 경우
4. 삭제 [제75조제1항제4호로 이동 <2010.1.1>]
5. 인증제품이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설 2010.1.1>
6. 인증서 효력정지 처분 기간내에 효력정지 사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7.20>

②전항에 의거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보유기관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평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인증제품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④인증이 취소된 인증서보유기관은 지체 없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0조에서 이동 <2007.12.1>]

부 칙 <2004.12.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③(기준적용)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에는 공통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05. 5.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부 칙 <2005. 9.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9월22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부 칙 <2005.12.26>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부 칙 <2007. 1.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 제3조(평가기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4. 1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부 칙 <2007. 12.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부 칙 <2008.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부 칙 <200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제3조(평가기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평
가기관으로 승인된 기관 및 업체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정기
관에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신청한 평가기관 승인신청기관은 제24
조(평가기관 지정요건)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201
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부 칙 <2011.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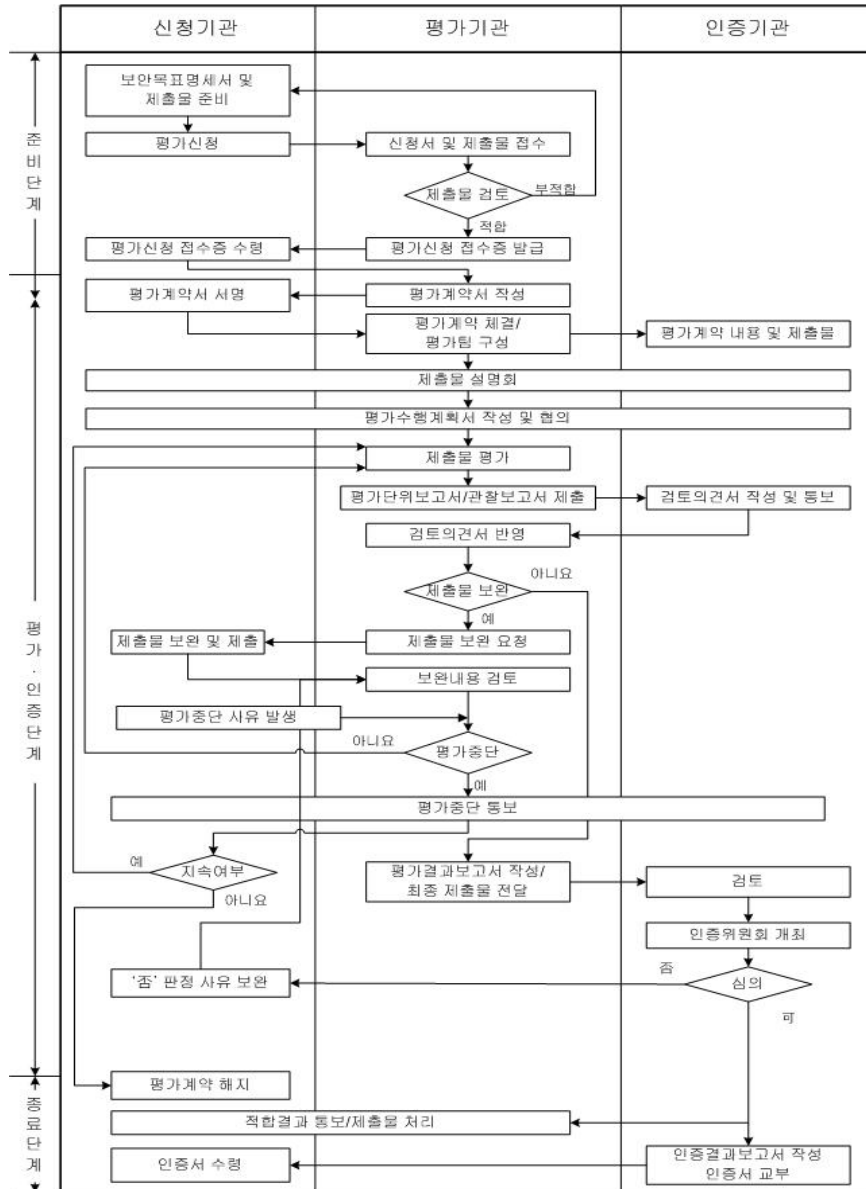
부 칙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1년 2월 1일 이전에 인증된 제품의 인증서효력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별표 1]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절차



[별표 2]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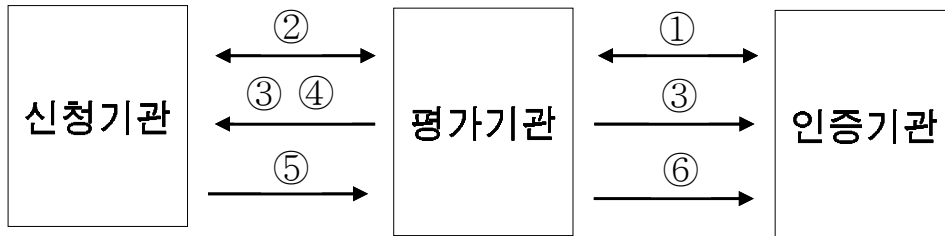
[별표 3]

평가보증등급별 제출물

등 급	제출물(CC 3.x)
EAL1	1. 보안목표명세서 2. 준비절차서 3. 기능명세서 4. 사용자운영 설명서 5. 형상관리문서
EAL2	○ EAL 1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포함 1. 시험서 2. 보안구조서 3. TOE 설계서 4. 배포문서
EAL3	○ EAL 2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포함 1. 개발보안문서 2. 생명주기 정의문서
EAL4	○ EAL 3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포함 1. 검증명세서 2. 개발도구 문서
EAL5 ~ EAL7	○ EAL4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포함 1. 내부구조 명세서 2. 보안정책모델 명세서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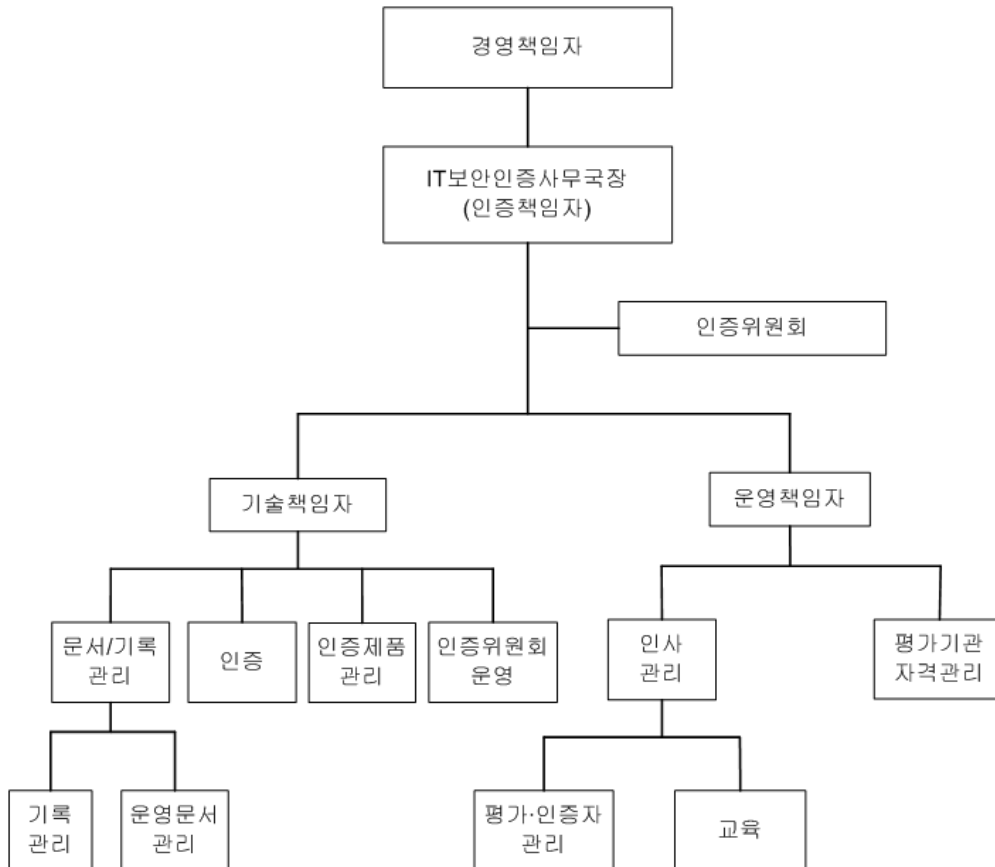
개발환경 보안점검 절차



- ① 평가기관은 신청기관의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기관과 협의한다.
- ② 평가기관은 ①항의 협의내용을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보안점검관련 일정 등을 협의한다.
- ③ 평가기관은 「국제용 정보보호제품 개발환경 보안점검 가이드」에 따라 신청기관의 보안점검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기관과 인증기관에 통보, 협조를 요청한다.
- ④ 평가기관은 보안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인증기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 ⑤ 신청기관은 ④항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한다.
- ⑥ 평가기관은 보안점검 결과를 평가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별표 5]

IT보안인증사무국 조직도



[별표 6]

제 품 군 표 기

제품군		제품분류
네트워크 정보보호 제품군 NISS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System)	네트워크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우터/스위치/게이트웨이 · 무선랜/이동통신보안 · IDS/IPS/트래픽관리장치/웹보안 · 망관리장치
	네트워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화벽/VPN/원격접근제어제품/네트워크접근제어제품 · 다중영역구분보안제품 · SSO/EAM/VoIP
정보보호 기반 제품군 ISIS (Information Security Infrastructure System)	보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바이러스/취약성 점검도구 · 불건전정보차단도구/ESM · 위험분석도구/DRM
	생체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얼굴/홍채/정맥/서명
	스마트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칩/COS/판독기/응용제품
	인증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A/권한관리기반(PMI)/OCSP/SCVP
컴퓨팅 정보보호 제품군 CISS (Computing Information Security System)	서버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기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형 등 DB, DB보안
	메일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IME/PGP
	디바이스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기 보안
	PC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접근통제/키보드 보안/보안 USB
보호프로파일 PP (Protection Profile)	-	-

* 상기 분류표기는 정보보호시스템 전체를 의미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제출물 인계인수증

□ 제품명 :

제출물명	제출물형태	부수	비고
상기 제출물을 인계 및 인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소속)			(성명)
인수자 : (소속)			(성명)
			(서명 또는인)
			(서명 또는인)

접 수 번 호 제 호		평가신청서	
신청기관	① 신청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동신청	
	② 상 호	③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④ 주 소	□□□-□□□	
	⑤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담 당 자	부 서 명	
		진 화	
		팩 스	
평 가 신 청 제 품	⑦ 평 가 기 준	⑧ 적 용 보호프로파일	
	⑨ 제 품 명/보 호 프로파일	⑩ 제 품 분 류	
	⑪ 제 품 번 호	⑫ 운 영 체 제	
	⑬ 개 발 국 가	⑭ 개 발 자 명	
⑮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최초평가 <input type="checkbox"/> 재평가 <input type="checkbox"/> 보호프로파일 평가		⑯ 신 청 등 급
⑰ 인 증 번 호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평가를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평가기관장> 귀하</p>			

평가신청서 작성요령

1. 해당하는 빈칸에 와 같이 표기한다.
2.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신청 형태에 따라 표기를 하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신청기관 명부를 추가로 작성한다.
 - ② 신청기관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상호 또는 명칭 기재)
 - ③ 신청기관이 정보보호제품 제조자, 판매자 및 수입자인지를 구분하여 모든 해당항목에 표기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 ④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 ⑤ 신청기관의 이름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 ⑥ 평가신청 업무 담당자의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⑦ 정보보호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 평가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의 버전을 기재한다.

- ⑧ 정보보호제품이 적용한 보호프로파일 명칭을 기재한다. 다만, 보호프로파일을 평가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⑨ 평가신청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명칭(모델명)과 버전번호를 기재한다.
 - ⑩ 평가신청 제품의 형태를 기재한다.(예 : 침입차단시스템)
 - ⑪ 정보보호제품의 제품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보호프로파일을 평가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⑫ 정보보호제품의 운영체제 명칭과 버전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보호프로파일을 평가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⑬ 정보보호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이 개발된 국가명을 기재한다.
 - ⑭ 정보보호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개발자 혹은 개발업체를 기재한다.
 - ⑮ 다음의 평가신청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 최초평가 : 처음으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신청하는 경우
 - 재 평가 : 인증제품의 형상이 보안기능의 향상, 추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 보호프로파일 평가 : 보호프로파일 평가신청인 경우
 - ⑯ 정보보호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신청등급을 기재한다.
 - ⑰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인증서 번호를 기재한다.
3. 평가수수료는 평가계약 체결시 평가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신청기관명부

신청 기관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팩 스		
신청 기관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팩 스		
신청 기관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팩 스		
신청 기관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팩 스		

[별지 제6호 서식]

이의·불만·분쟁처리 신청서

신청기관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제품명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이의 <input type="checkbox"/> 불만 <input type="checkbox"/> 분쟁	
사유		
<p>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이의, 불만, 분쟁) 해결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7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평가기관 승인 신청서		
신청 기관	① 법인명			
	② 주소	□□□-□□□		
	③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④ 담당자		연락처	전화 : E-Mail :
<p>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의거하여 평가기관 승인을 신청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본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으며, IT보안인증사무국의 승인심사에 모든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심사 과정에서 알게된 유·무형의 모든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법인대표: (법인인감)</p> <p style="text-align: center;">IT보안인증사무국장 귀하</p>				

평가기관 준수사항 서약서

법인 _____(이하 '법인'이라 한다)은/는 평가기관 승인 신청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평가기관으로 승인받은 이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법인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법인은 평가 수행에 있어 공통평가기준 및 방법론을 적용하고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용하겠습니다.
3. 법인은 평가신청기관의 저작권 사항 등 평가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모회사, 자회사, 계열회사, 투자자,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5. 법인은 평가신청기관 등이 평가업무의 결함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IT보안인증사무국장 귀하

법 인 명 : _____ 법인등록번호 : _____
법 인 주 소 : _____
대 표 자 성 명 : _____ (법인인감)

상기 법인의 대표자 _____은/는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대 표 자 명 : _____ (대표자인감)
대 표 자 주 소 : _____

[별지 제9호 서식]

<접수번호>

관리 번호	
----------	--

평가결과보고서

<평가대상제품명>

년 월 일

<평가기관명>

제 1 장 개요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관련규정(수행규정 등)
 - 문서 식별정보, 보안목표명세서 및 평가대상제품 식별정보, 적용한 보호프로파일 식별정보
 - 신청기관명, 평가기관명, 평가자 이름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 2 장 평가대상제품 구조

- 서브시스템 수준의 구조도
 - * 보호프로파일 평가시 해당되지 않음

제 3 장 평가개요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방법론), 기법, 도구, 평가관련 규제 사항 및 평가결과 배포 규제사항(법령, 조직의 내부규정 등)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 4 장 평가결과

- 평가대상이 정보보호제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보증클래스 명, 보증컴포넌트별 관정 및 평가자 판단 근거

- 개발자 시험서 개요, 독립 시험서 개요, 침투 시험서 개요, 악용 가능한 취약성 및 잔여 취약성 목록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o 평가대상이 보호프로파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보호프로파일 평가기준(APE) 및 평가방법론에 의거한 보증 컴포넌트별 판정 및 평가자 판단 근거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 5 장 결론 및 권고사항

- o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총론, 평가결과 요약표, 특이사항, 평가제출물 목록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부록 1 용어정의

부록 2 관찰보고서

- o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보완요청 목록(보완요청 항목, 처리상태, 제목수준의 요약)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평가기관 승인서

제 0000-00 호		평가기관 승인서 Evaluation Facility License	
기관명 : Organization Name	주소 : Address	발급일 : Issuing Date	만료일 : Expiry Date
평가범위 : Evaluation Level	<p>상기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 평가기관으로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므로 국제상호인증협정의 공통평가기준과 공통평가방법론에 따라 IT보안제품 및 보호프로파일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합니다.</p> <p>Having met all requirements for an IT security evaluation facility, the named organization is entitled to perform testing and evaluation of IT security products and protection profiles against Common Criteria and Common Evaluation Methodology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Standards Ac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Act.</p>		
국가정보원장 Directo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보호제품 평가자 자격증

제 호

정보보호제품 평가자 자격증

성 명 :
소 속 :
자 격 :
평가범위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제34조에 의거, 위 사람에게 평가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IT보안인증사무국장

[별지 제11-2호 서식]

평가자 자격검토 요청서

성명	(한자)	생년월일		소속	
교육 훈련 ¹⁾					
보유 자격	<input type="checkbox"/> 주임평가자		<input type="checkbox"/> 수습평가자		
요청 자격	<input type="checkbox"/> 선임평가자		<input type="checkbox"/> 주임평가자		
경력	기간(년. 월)	소속(근무처)		담당업무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 ²⁾					

평가자 자격심사 점검항목

소속기관 및 성명				
평가자 자격				
< 평가 항목 >			평 가	
1. 기본요건	충족	미흡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등 평가인증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있는가 ?				
○ 최근 1년 이내에 40시간 이상 평가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 인증기관이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2. 자질 및 능력	A	B	C	D
1) 평가수행계획서 작성 능력이 있는가 ? - 평가범위 선정의 적절성 및 평가기간 산정방법의 타당성 등				
2) 평가단위보고서 작성 능력이 있는가 ? - 평가기준/평가방법론 해석 및 실제 평가 적용 능력 등				
3) 관찰보고서 작성 능력이 있는가 ? - 평가기준 및 방법론에 적합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서술 등				
4) 취약성 평가의 적절성 - 취약성 평가도구 사용 능력 등				
5) 평가자 독립시험의 적절성 - 독립시험 항목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				
6)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능력이 있는가 ? - 평가결과의 일관성 및 내용의 조리성				
3. 고등급 평가기술에 대한 기본지식				
7) 정형화 기법과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				
8) EAL5 이상 컴포넌트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알고 있는가 ?				
9) EAL5 이상 컴포넌트에 대한 평가방법론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는가 ?				
<input type="checkbox"/> 평가기준 - A : 아주 우수(10), B : 우수(8), C : 보통(4), D : 미흡(0) ※ 평가자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고 평점이 60점 이상일 경우 통과				
평점 : ()				
< 심사 의견 >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평가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신청기관	업체명	
	성명	
	연락처	
제품명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평가 <input type="checkbox"/> 재평가 <input type="checkbox"/> 보호프로파일 평가	
평가기준		
신청등급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가기관장> 귀하		접수인

[별지 제13호 서식]

<접수번호>

평가수행계획서

<평가대상제품명>

년 월 일

<평가기관명>

1. 개요

- 평가대상이 정보보호제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대상제품명, 신청등급, 신청기관, 개발업체, 신청일, 계약일, 신청 분류(최초평가/재평가), 적용된 암호기술, 운영체제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평가대상이 보호프로파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보호프로파일명, 신청등급, 신청기관, 개발업체, 신청일, 계약일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2. 준수선언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기준 식별, 보호프로파일 식별(선택), 패키지 식별(선택)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평가범위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 평가대상이 보호프로파일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보안목표명세서에 명세된 물리적 범위와 논리적 범위를 서술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평가일정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반 구성, 평가 소요기간, 평가 세부 수행계획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신청기관 일반현황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주소, 조직 구성, 주요 사업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접수번호>

평가단위보고서

<평가대상제품명>

년 월 일

<평가기관명>

1. 목적

- 평가단위보고서 작성 목적에 대해 서술

2. 참조문서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단위보고서에 사용된 평가 참조문서(예 : 공통평가기준, 공통평가방법론, 보호프로파일,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 규정) 등
 - 평가단위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출물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평가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자 조사활동 목적, 평가자 조사방법(평가과정), 평가자 판정 근거(결론) 등 세부 평가활동 내역 기록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결론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공통평가방법론에서 요구하는 ‘평가자 요구사항별 평가자 판정’ 및 ‘컴포넌트별 평가자 판정’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독립·취약성 시험, 개발환경보안점검과 관련한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 가능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관찰보고서

<평가대상제품명>

년 월 일

<평가기관명>

1. 개요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신청 개요 : 접수번호, 평가대상제품명, 평가보증등급, 신청기관명 등
 - 관찰보고서 개요 : 관찰보고서 식별정보, 보완요청 목록, 회의 일시, 평가자 이름, 신청기관 담당자 이름 등

2. 보완요청

- 보완요청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컴포넌트 식별, 보완내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정도, 보완요청 이행 기관, 보완요청 이행 기한,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서명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보완요청 사항 요약정보(보완요청 항목 번호, 작업단위, 평가에 미치는 영향정도, 보완요청 이행 기간) 등
 - 인증기관, 평가기관, 신청기관의 서명 등

[별지 제16호 서식]

평가중단통보서

1. 평가신청 내역

- 접수 번호 :
- 제품명 :
- 평가신청등급 :
- 신청분류 :
- 평가기준 :
- 평가신청접수일 : 년 월 일

2. 평가중단 사유

(부족시 별지 사용)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정보보호제품 인증서

 제0000-0000	<h2 style="font-size: 2em;">인 증 서</h2> <p>KECS-NISS-0000-0000</p> <h3 style="font-size: 1.2em;">제품명</h3>	
신청 기관 : 제품 유형 : 제품 버전 : 인증보고서 번호 : 보증 등급 :	보호프로파일 : 평가 기관 : 발급 일자 :	<p>위 제품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가 정보보호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p>
<p>이 정보보호제품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근거한 평가기관이 공통평가기준(CC) 버전 x.x와 공통평가방법론(CEM) 버전 x.x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다. 본 인증서는 인증보고서에서 명시한 제품 구성환경 및 해당 버전만을 보증한다. 평가는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평가세부결과와 일치한다. 본 인증서는 IT보안인증사무국(ITSCC) 또는 인증서를 인정하는 기관이 상기 제품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p>		
<h3>IT보안인증사무국장</h3>		

(영문)

정보보호제품 인증서

	
IT Security Certification Center Certificate <i>is awarded to</i> Product Name	
Type of Product :	Protection Profile Conformance :
Version and Release Numbers :	Name of IT Security Evaluation Facility :
Certification Report Identifier :	Date Issued :
Certification Number :	
Assurance Level :	
<p>The IT Product identified in this certificate has been evaluated at an approved evaluation facility established under the Korea IT Security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cheme using the Common Methodology for IT Security Evaluation, Version x.x, for conformance to the Common Criteria for IT Security Evaluation, Version x.x. This certificate applies only to the specific version and release of the product in its evaluated configuration and in conjunction with the complete certification report. The evaluation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 IT Security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cheme and the conclusions of the evaluation facility in the evaluation technical report are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adduced. This certificate is not an endorsement of the IT product by the ITSCC or by any other organization that recognizes or gives effect to this certificate, and no warranty of the IT product by ITSCC or any other organization that recognizes or gives effect to this certificate, is either expressed or implied.</p>	
Director of IT Security Certification Center, Republic of Korea	

보호프로파일 인증서



KECS-PP-0000-0000

보호프로파일명



인 증 서

신 청 기 관 :	보 증 동 급 :
제 품 유 형 :	평 가 기 관 :
제 품 버 전 :	발 급 일 자 :
인증보고서 번호 :	



위 보호프로파일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가 정보보호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이 보호프로파일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근거한 평가편이 공통평가기준(CC) 버전 x.x와 공통평가방법론(CEM) 버전 x.x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다. 본 인증서는 인증결과보고서에서 명시한 보호프로파일 버전만을 보증한다. 평가는 정보보호 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평가결과보고서의 내용은 평가세부결과와 일치한다. 본 인증서는 IT보안인증사무국(ITSCC) 또는 인증서를 인정하는 기관이 상기 제품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T보안인증사무국장

보호프로파일 인증서

(영문)

	
IT Security Certification Center Certificate <i>is awarded to</i> Protection Profile Name	
Type of Product :	Assurance Level :
Version and Release Numbers :	Name of IT Security Evaluation Facility :
Certification Report Identifier :	Date Issued :
Certification Number :	
<p>The protection profile identified in this certificate has been evaluated at an approved evaluation facility established under the Korea IT Security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cheme using the Common Methodology for IT Security Evaluation, Version x.x, for conformance to the Common Criteria for IT Security Evaluation, Version x.x. This certificate applies only to the specific version of the protection profile listed in this certificate and in conjunction with the complete certification report. The evaluation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Korea IT Security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cheme and the conclusions of the evaluation facility in the evaluation technical report are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adduced. This certificate is not an endorsement of the protection profile by the ITSCC or by any other organization that recognizes or gives effect to this certificate, and no warranty of the protection profile by ITSCC or any other organization that recognizes or gives effect to this certificate, is either expressed or implied.</p>	
Director of IT Security Certification Center, Republic of Korea	

[별지 제19호 서식]

인 증 마 크

1. 인증마크 도안



2. 인증번호는 다음과 같다.

KECS-제품군 표기-일련번호-발급년도

3. 제품군 표기는 별표 6과 같다.

4. 위의 인증마크는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또는 품질보증서 등에 부착하며, 인증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그 사용목적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앞 면)

접수번호 제 호		인증마크 사용신청서		처 리 기 간 15일
신청 기관	① 상 호	②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③ 주 소	□□□-□□□		
	④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⑤ 담당자	부 서 명	전 화 :	E-Mail :
⑥ 제 품 분 류				
⑦ 제 품 명				
⑧ 운 영 체 제				
⑨ 인 증 번 호				
⑩ 평 가 보 증 등 급				
⑪ 신 청 수 량				
<p>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IT보안인증사무국장 귀하</p>				

(뒷면)

인증마크 사용신청서 작성요령

1. 해당하는 빈칸에 와 같이 표기한다.
2.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청기관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재한다.
 - ② 신청기관이 정보보호제품 제조자, 판매자 및 수입자인지를 구분하여 모든 해당항목에 표기한다.
 - ③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
 - ④ 신청기관의 이름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⑤ 평가신청 업무담당자의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⑥ 제품분류 또는 대상제품군(네트워크 정보보호제품, 정보보호 기반제품, 컴퓨팅 정보보호제품, 보호프로파일)을 기재한다.
 - ⑦ 해당 정보보호제품의 제품명칭(모델명)과 버전번호를 기재한다.
 - ⑧ 해당 정보보호제품의 운영체제 명칭과 버전번호를 기재한다.
 - ⑨ 교부받은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 ⑩ 부여받은 해당 정보보호제품의 평가보증등급을 기재한다.
 - ⑪ 교부받고자 하는 인증마크의 수량을 기재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의안 검토의견서

의안 번호		
안전	검토 결과	
	적정	부적정
검토 항목		검토의견
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조리성 및 일관성		
위협에 대응하는 적절한 보안기능 제공 여부		
보안기능시험 평가 - 시험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시험도구 및 환경의 적절성 및 타당성 (TOE가 PP인 경우 해당 없음)		
취약성시험 평가 - 시험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취약성 분석도구의 적절성 및 타당성 - TOE 운영상 취약성에 대한 대응 방법 적절성 및 타당성 (TOE가 PP인 경우 해당 없음)		
기타		

년 월 일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위원회 위원

(인/서명)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집행자

소속

성명

(인)

보안영향분석서

(Security Impact Analysis Report)

1. 인증제품 개요

- 가. 작성자 정보 (인증서보유기관명, 작성일, 작성자 등)
- 나. 인증제품 (제품명, 버전, 인증일, 평가보증등급 등)
- 다. 이전 『변경승인』에 관련된 내용 (제품명, 버전, 변경승인일, 변경승인 내용 등)

2. 변경 내역

- 가. 변경 前/後 시스템 구성
- 나. 변경된 보안기능 및 인터페이스
- 다.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 라. 변경된 보안기능 항목 및 보안속성 (주체, 객체, 사용자 관련 정보)
- 마. 변경이 보안기능 항목 및 보안속성에 미치는 영향
- 바. 변경이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에 미치는 영향
- 사. 변경된 소스 및 설명
- 아. 테스트 정보 (테스트범위 분석, Test Case, 시험절차, 테스트결과 등)
- 자. 변경된 제출물 범위 및 내용 서술

자체취약성분석서

(Vendor's Vulnerability Analysis Report)

1. 인증제품 개요

- 가. 작성자 정보 (인증서보유기관명, 작성일, 작성자 등)
- 나. 인증제품 (제품명, 버전, 인증일, 평가보증등급 등)
- 다. 이전 『변경승인』에 관련된 내용 (제품명, 버전, 변경승인일, 변경승인 내용 등)

2. 취약성 점검 내역

- 가. 최초 평가시 자체 취약성 점검 내역 (점검 항목명, 점검 내용 요약, 점검 결과 등)
- 나. 추가된 자체 취약성 점검 내역 (점검 항목명, 점검 내용 요약, 점검 결과 등)
- 다. 테스트 정보 (추가 점검 항목에 대한 시험 절차, 시험도구, Test Case 등)
- 라. 기타 정보 (취약성 점검 관련 기타 고려사항 명기)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및
유사제품 일괄평가인증을 위한
세부 수행지침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및 유사제품 일괄평가인증 세부 수행지침

제정 2007. 3.15

개정 2008. 9. 1

개정 2011. 7.20

개정 2012. 2.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업무와 유사 정보보호제품 일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용 정보보호제품”(이하 ‘국내용 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공공기관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평가신청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2.1>
2. “유사 정보보호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운영환경(운영체제, 하드웨어 사양 등)은 다르나 보안기능이 동일한 정보보호제품을 말한다.
3. “일괄평가”라 함은 유사 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이 각각의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인증서”(이하 ‘국내 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국내용 제품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증한 후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5.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국가·공공기관에 필요한 필수 보안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12.2.1>

제3조(국내용 제품 평가신청) 신청기관은 정보보호제품을 국내용으로 평가인증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용 평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제출물 2부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보증등급별 제출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20>

제4조(일괄평가신청) ①신청기관은 유사 정보보호제품을 국내용으로 일괄 평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각 운영환경을 기재하여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일괄평가신청은 국제공인인증서 발급 대상제품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신청서를 사용한다.

③다만, 운영환경의 변화가 평가신청제품의 보안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제품은 일괄평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조(국내용 제품에 대한 평가) ①평가기관은 국내용 제품에 대하여 평가보증등급에서 요구하는 평가항목중 보안기능과 취약성시험을 제외한 일부항목은 표본추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표본추출 방법은 IT보안인증사무국장이 정한 절차서에 따른다.

②평가기관은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

1. 평가수행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
2. 평가단위보고서 최종본(별지 제2-3호 서식)
3. 관찰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

③평가기관은 인증기관 및 신청기관에게 관찰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인증기관 또는 신청기관은 관찰보고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소집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9.1>

④국내용 제품에 대한 평가범위는 제품 전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신청시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⑤신청기관은 평가신청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보호프로파일 또는 보안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최신의 것을 제품에 적용하여 평가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프로파일의 경우 보증등급의 변경은 가능하다. <개정 2012.2.1>

⑥신청기관이 보호프로파일의 보증등급을 변경하여 평가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0>

제5조의2(개발환경 보안점검) ①평가기관은 신청기관의 평가대상제품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②전항의 보안점검은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개발환경 보안점검 가이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8.9.1]

제6조(국내 인증서 발급) ①평가기관은 국내용 정보보호제품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

②인증기관은 국내용 정보보호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내 인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한다.

④국내 인증서 발급시에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국내용 인증제품에 대한 관리) ①인증서보유기관은 보호프로

파일 또는 보안요구사항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보안기능을 6개월 이내에 인증제품에 적용하고 인증 효력유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전항과 관련하여 인증서보유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서보유기관이 인증제품에 최신의 보호프로파일 또는 보안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인증서효력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효력 만료일 6개월 이전에 보호 프로파일 또는 보안요구사항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제·개정 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2.1]

부 칙 <2007.3.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따른다.

제3조(평가계약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신청기관은 이 지침 시행전에 평가계약한 제품에 대하여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용 제품으로 평가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08.9.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

증 수행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부 칙 <2011.7.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
증 수행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유효하다.

부 칙 <20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
증 수행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증효력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을
따른다.

②이 규정 시행 이전에 평가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제5조(국내용
제품에 대한 평가)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평가보증등급별 제출물

등 급	제출물(CC 3.x)
EAL1	1. 보안목표명세서 2. 준비절차서 3. 기능명세서 4. 사용자운영 설명서 5. 형상관리문서
EAL2	○ EAL 1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포함 1. 시험서 2. 보안구조서 3. TOE 설계서 4. 취약성 분석서
EAL3	○ EAL 2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포함 1. 개발보안문서 2. 생명주기 정의문서
EAL4	○ EAL 3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포함 1. 검증명세서 2. 개발도구 문서
EAL5 ~ EAL7	○ EAL4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포함 1. 내부구조 명세서 2. 보안정책모델 명세서

평가신청서 작성요령

1. 해당하는 빈칸에 와 같이 표기한다.
2.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신청 형태에 따라 표기를 하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신청기관 명부를 추가로 작성한다.
 - ② 다음의 평가신청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 최초평가 : 처음으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신청하는 경우
 - 재 평가 : 인증제품의 형상이 보안기능의 향상, 추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 ③ 신청기관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상호 또는 명칭 기재)
 - ④ 신청기관이 정보보호제품 제조자, 판매자 및 수입자인지를 구분하여 모든 해당항목에 표기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 ⑤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 ⑥ 신청기관의 이름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 ⑦ 평가신청 업무 담당자의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⑧ 정보보호제품 평가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의 버전을 기재한다.
 - ⑨ 정보보호제품이 적용한 보안요구사항의 명칭, 작성일 및 버전을

기재한다.

- ⑩ 평가신청제품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명을 기재한다.
- ⑪ 평가신청제품의 형태를 기재한다.(예 : 침입차단시스템)
- ⑫ 평가신청제품이 운영되는 환경을 기재한다.
- ⑬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인증서 번호를 기재한다.
- ⑭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신청등급을 기재한다.

3. 평가수수료는 평가계약체결시 평가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접 수 번 호 제 호		평가신청서		
신청기관	① 신청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동신청		
	② 상 호	③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④ 주 소	□□□-□□□		
	⑤ 대 표 자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⑥ 담 당 자	부 서 명 진 화 팩 스		
평 가 신 청 제 품	⑦ 평 가 기 준	⑧ 적 용 보호프로파일		
	⑨ 제 품 명/보 호 프로파일	⑩ 제 품 분 류		
	⑪ 제 품 번 호	⑫ 운 영 체 제		
	⑬ 개 발 국 가	⑭ 개 발 자 명		
⑮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최초평가 <input type="checkbox"/> 재평가 <input type="checkbox"/> 보호프로파일 평가		⑯ 신 청 등 급	
⑰ 인 증 번 호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평가를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평가기관장> 귀하</p>				

평가신청서 작성요령

1. 해당하는 빈칸에 와 같이 표기한다.
2.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평가신청 형태에 따라 표기를 하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신청기관 명부를 추가로 작성한다.
 - ② 신청기관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상호 또는 명칭 기재)
 - ③ 신청기관이 정보보호제품 제조자, 판매자 및 수입자인지를 구분하여 모든 해당항목에 표기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 ④ 신청기관의 주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 ⑤ 신청기관의 이름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기관)
 - ⑥ 평가신청 업무 담당자의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 ⑦ 정보보호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 평가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의 버전을 기재한다.
 - ⑧ 정보보호제품이 적용한 보호프로파일 명칭을 기재한다. 단, 보호프로파일 평가신청일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⑨ 평가신청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명칭(모델명)과 버전번호를 기재한다.
 - ⑩ 평가신청 제품의 형태를 기재한다.(예 : 침입차단시스템)

- ⑪ 정보보호제품의 제품번호를 기재한다.
 - ⑫ 정보보호제품의 운영체제 명칭과 버전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보호프로파일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⑬ 정보보호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이 개발된 국가명을 기재한다.
 - ⑭ 정보보호제품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개발자 혹은 개발업체를 기재한다.
 - ⑮ 다음의 평가신청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 최초평가 : 처음으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신청하는 경우
 - 재 평가 : 인증제품의 형상이 보안기능의 향상, 추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 보호프로파일 평가 : 보호프로파일 평가신청인 경우
 - ⑯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신청등급을 기재한다.
 - ⑰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인증서 번호를 기재한다.
3. 평가수수료는 평가계약체결시 평가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접수번호>

평가수행계획서

<평가대상제품명>

년 월 일

<평가기관명>

1. 개요

- 평가대상이 정보보호제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대상제품명, 신청등급, 신청기관, 개발업체, 신청일, 계약일, 신청 분류(최초평가/재평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여부(모듈명, 제조사, 검증번호 포함), 국가용 암호알고리즘 적용여부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2. 준수선언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기준 식별, 보안요구사항 식별, 패키지 식별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평가범위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보안목표명세서에 명세된 물리적 범위와 논리적 범위를 서술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평가일정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반 구성, 평가 소요기간, 평가 세부 수행계획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신청기관 일반현황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주소, 조직 구성, 주요 사업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접수번호>

평가단위보고서

<평가대상제품명>

년 월 일

<평가기관명>

1. 목적

- 평가단위보고서 작성 목적에 대해 서술

2. 참조문서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단위보고서에 사용된 평가 참조문서(예 : 공통평가기준, 공통평가방법론, 보안요구사항,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 규정) 등
 - 평가단위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제출물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평가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항목별 평가자 조사활동 목적, 평가자 조사방법(평가과정), 평가자 판정 근거(결론) 등 세부 평가활동 내역 기록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4. 결론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공통평가방법론에서 요구하는 ‘평가자 요구사항별 평가자 판정’ 및 ‘컴포넌트별 평가자 판정’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독립·취약성 시험, 개발환경보안점검과 관련한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 가능

[별지 제2-4호 서식]

<접수번호>

관찰보고서

<평가대상제품명>

년 월 일

<평가기관명>

1. 개요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신청 개요 : 접수번호, 평가대상제품명, 평가보증등급, 신청기관명 등
- 관찰보고서 개요 : 관찰보고서 식별정보, 보완요청 목록, 회의 일시, 평가자 이름, 신청기관 담당자 이름 등

2. 보완요청

○ 보완요청 항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컴포넌트 식별, 보완내용, 평가에 미치는 영향정도, 보완요청 이행 기관, 보완요청 이행 기한,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서명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보완요청 사항 요약정보(보완요청 항목 번호, 작업단위, 평가에 미치는 영향정도, 보완요청 이행 기간) 등
- 인증기관, 평가기관, 신청기관의 서명 등

[별지 제2-5호 서식]

<접수번호>

관리 번호	
----------	--

평가결과보고서

<평가대상제품명>

년 월 일

<평가기관명>

제 1 장 개요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관련규정(수행규정 등)
 - 문서 식별정보, 보안목표명세서 및 평가대상제품 식별정보, 적용한 보호프로파일 식별정보
 - 신청기관명, 평가기관명, 평가자 이름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 2 장 평가대상제품 구조

- 서브시스템 수준의 구조도

제 3 장 평가개요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평가방법(평가기준/평가방법론), 기법, 도구, 평가관련 규제 사항 및 평가결과 배포 규제사항(법령, 조직의 내부규정 등)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 4 장 평가결과

-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보증클래스 명, 보증컴포넌트별 판정 및 평가자 판단 근거
 - 개발자 시험서 개요, 독립 시험서 개요, 침투 시험서 개요, 악용 가능한 취약성 및 잔여 취약성 목록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 5 장 결론 및 권고사항

- o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총론, 평가결과 요약표, 특이사항, 평가제출물 목록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부록 1 용어정의

부록 2 관찰보고서

- o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보완요청 목록(보완요청 항목, 처리상태, 제목수준의 요약) 등
 - 기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보보호제품 인증서

 <p>제 0000-00 조</p>	<h2>인 증 서</h2> <p>NISS-0000-0000</p> <h3>제 품 명</h3>	<p>모 증 등 규 :</p> <p>평 가 기 준 :</p> <p>반 보 일 자 :</p>
<p>신 청 기 관 :</p> <p>보 안 요 구 사 항 :</p> <p>인 증 보 고 서 인 호 :</p> <p>발 급 일 자 :</p>	<p>위 제품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평가한 결과가 정보보호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다. 이 정보보호제품은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수행규정이 근거한 평가기관이 공통평가기준 (CC) 버전 x.x와 공통평가방법론(CEM) 버전 x.x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다. 본 인증서는 인증결과보고서 에서 명시한 제품 구성환경 및 해당 버전만을 보증하며, 국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된다. 본 인증서는 IT보안인증 사무국(ITSCC) 또는 인증서를 인정하는 기관이 상기 제품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p>	
<h2>IT 보안인증사무국장</h2>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신청기관명부

신청 기관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팩 스	
신청 기관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팩 스	
신청 기관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팩 스	
신청 기관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전 화	
			팩 스	

【 문 의 처 】

□ 인증기관 (IT보안인증사무국)

전화번호 : +82-2-3412-3380

홈페이지 : <http://www.nis.go.kr>

E-mail : info@kecs.go.kr

□ 평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 (138-803)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3층

전화번호 : +82-2-405-5530

홈페이지 : <http://www.kisa.or.kr>

E-mail : cc@kisa.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 소 : (152-718)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8길 7

전화번호 : +82-2-860-1560, 1562

홈페이지 : <http://www.ktl.re.kr>

E-mail : swtest@ctl.re.kr

한국시스템보증(주)

주 소 : (138-200)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3-10 해진빌딩 4층

전화번호 : +82-2-2088-5099

홈페이지 : <http://www.kosyas.com>

E-mail : info@kosyas.com

(주)한국아이티평가원

주 소 : (138-160)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4-20 5층

전화번호 : +82-2-400-8221

홈페이지 : <http://www.ksel.co.kr>

E-mail : ywyun@ksel.co.kr

정보통신기술협회

주 소 : (463-82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호

전화번호 : +82-31-724-0238

홈페이지 : <http://www.tta.or.kr>

E-mail : cc_info@tta.or.kr